

의안번호	2200813
의 퇴 인	이수진 의원
회 답 일	2024.7.3.
추 계 번호	24E1264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이용에 대한
소득공제 및 부가가치세 면세 신설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04조의34 (가사서비스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)	- 가사서비스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- 대상: 인증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가사서비스를 이용한 근로자 - 공제율: 15%, 공제한도: 연 500만원	
2	안 제106조제1항제4호의6(부가가치세의 면제 등)	- 가사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신설 - 인증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근로자를 활용하여 제공하는 가사서비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	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04조의34 (가사서비스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106조제1항제4호의6(부가가치세의 면제 등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가. 가사서비스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

- 개정안은 「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인증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지출액의 15%를 연 5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하려는 것으로서 소득세수의 감소가 예상됨
 - 「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」은 2022년부터 시행되어 동법에 따라 인증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2024년 6월 기준 총 107개소로, 소속 가사관리사는 약 1,800여명임¹⁾
- 다만, 개정안에 따른 세수 추계를 위해서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이용자의 규모, 이용자별 소득규모 및 가사서비스 이용금액 등에 관한 자료가 필요하나, 해당 자료의 부재로 추계가 불가능함
 - 고용노동부가 수행한 연구용역²⁾에서 가사서비스 이용금액은 1시간당 청소·세탁·주방일 등 일반 가사서비스의 경우 15,000원, 양육·환자간병 등 돌봄서비스의 경우 13,000원 수준으로 조사되었으나,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이용자 수 및 이용자별 평균 이용시간 등에 관한 자료가 미비함

나. 가사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신설

- 개정안은 인증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근로자를 활용하여 제공하는 가사서비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려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수의 감소가 예상됨
- 다만, 개정안에 따른 세수 추계를 위해서는 인증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매출액에 관한 자료가 필요하나, 해당 자료의 부재로³⁾ 추계가 불가능함

1) 고용노동부 답변

2)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(한국노동연구원, '23년)

3) 고용노동부 답변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1과	어수진	박연서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어수진	02-6788-4745	sjeo1993@assembly.go.kr